캄보디아 석유개발 협정에 대한 연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류권홍

I. 서론

오랜 동안의 내분과 정치적 혼돈 상황을 지나, 캄보디아는 최근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요한 신흥국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태국과 라오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베트남과 국경을 나누고 있는 캄보디아는 남서쪽으로 태국만의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입헌군주제의 다당제 국가형태에 속한다.

캄보디아는 국제적으로 대륙붕에 대한 주장을 처음 펼친 국가들 중 하나이며, 1957년 대륙붕과 관련된 국내법을 제정하고, 1960년 대륙붕 협정(Convention on Continental Shelf)을 비준하였다.[1] 캄보디아가 이렇게 대륙붕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태국과의 해양 자원개발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는 성장하는 자국의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석유·가스의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자원협조도 가능하다.

아래에서는 캄보디아의 경제와 에너지, 캄보디아의 석유·가스 개발제도 및 캄보디아가 택하고 있는 생산물분배협정 중 중요한 내용들을 검토한다.

II. 캄보디아의 경제와 에너지

1. 캄보디아의 경제

IMF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은 연 7.7%로 세계적으로도 성장률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2004년 캄보디아의 물가상승률은 1.7%, 수출규모는 $16억 달러였다. 캄보디아의 경제성장률은 아래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다.[2]

국가	연도	
	2016	2017
브루나이	1.0	2.5
캄보디아	7.0	7.1

1) 대륙붕협정은 1958년에 체결되었고, 캄보디아는 1960년에 이를 비준한 것이다.
2) ADB, Cambodia: Economy, at <https://www.adb.org/countries/cambodia/economy>.

국가	연도	
	2016	2017
인도네시아	5.0	5.1
라오스	6.8	7.0
말레이시아	4.1	4.4
미얀마	8.4	8.3
필리핀	6.4	6.2
싱가포르	1.8	2.0
태국	3.2	3.5
베트남	6.0	6.3
평균	4.5	4.6

표 1 아시아 국가별 경제성장률

20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견실한 경제성장의 결과, 2015년 캄보디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70에 이르는 중하위권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섬유, 건설, 서비스 분야가 캄보디아 경제의 중요 동력이며, 2016년에도 견실한 성장이 예견되고 있다.[3] 특히 관광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이다.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1997년 약 22만명에서 2007년 200만 명으로 증가했다.

비록 감소 속도가 줄어들고 있지만 캄보디아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다. 2012년 기준, 빈곤율은 17.7%에 이르렀으며,[4] 그 중 약 90%가 시골에 거주하고 있었다.

건강·교육 또한 여전히 캄보디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정부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2015년 보고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아동의 32% 약 50만 명이 발육부진에, 1,230만 명의 전체 인구 중[5] 79%가 수도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58%에 이르는 930만 명이 하수처리 시설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6]

2005년 472명에 이르던 10만 명의 출산 당 산모 사망률이 2014년에는 170명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5세 이하의 영아 사망률 또한 2005년 1,000명 당 83명에서 2014년 35명으로 눈에 보이게 감소했다. 그리고 순 초등학교 진학률도 2001년의 81%에서 2014년 95.3%로 높아졌다.[7]

3) World Bank, Cambodia, Countries at a Glance, at <http://www.worldbank.org/en/country/cambodia>.
4) 2015년 세계은행은 빈곤율 기준을 기존의 1일 $1.25에서 $1.9로 변경했다. World Bank, 'World Bank Forecasts Global Poverty to Fall Below 10% for First Time; Major Hurdles Remain in Goal to End Poverty by 2030' (October 4, 2015) at <http://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5/10/04/world-bank-forecasts-global-poverty-to-fall-below-10-for-first-time-major-hurdles-remain-in-goal-to-end-poverty-by-2030>.
5) 세계은행은 2015년 캄보디아 인구를 1,230만으로 보고 있으나, IEA는 2014년이 1,530만을 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IEA, Cambodia: Indicators for 2014, at <https://www.iea.org/statistics/statisticssearch/report/?year=2014&country=Cambodia&product=Indicators>.
6) World Bank, above n 3.
7) Ibid.

이런 눈에 띄는 성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여전히 취약한 공공서비스 분야, 토지·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환경 및 거버넌스의 후진성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2. 캄보디아 에너지

가. 에너지 현황

캄보디아는 상당한 규모의 수력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석유·가스·석탄 등의 화석연료 부존 가능성도 아주 높은 국가이다.

2014년 캄보디아의 1차 에너지 구성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8] 6,367ktoe의 에너지 중 바이오와 폐기물이 66%, 석유가 27.7%, 석탄이 3.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력이 약 2.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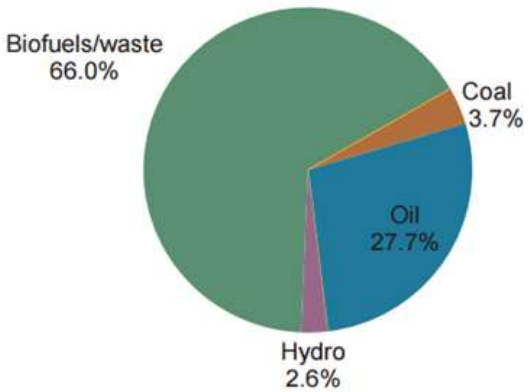

캄보디아의 에너지 생산·수입·수출을 각 에너지원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9] 유망한 매장지를 탐사해오고 있으나 아직은 생산단계에 이르지 못해 석유·석탄·천연가스 모두 수입해오고 있고, 정유시설도 없기 때문에 원유를 수입하여 정유처리를 못하며, 따라서 석유생산물을 모두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	원유	석유 생산물	천연가스	원자력	수력	지열, 태양열 등	바이오 및 폐기물	전력	열	총계
생산	0	0	0	0	0	159	0	4,099	0	0	4,258
수입	233	0	1,797	0	0	0	0	0	155	0	2,185
수출	0	0	0	0	0	0	0	0	0	0	0
총계	**233**		**1,797**	**0**	**0**	**159**	**0**	**4,099**	**155**	**0**	**6,443**

표 2 2014년 캄보디아의 에너지원별 구성

8) IEA, above n 5.
9) Ibid.

캄보디아의 전력시스템은 1970년에서 1979년에 이르는 내전으로 인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즉, Kiriom I 수력발전소에서 수도 프놈펜에 이르는 115Kv 용량의 120㎞에 이르는 유일한 송전망이 있었으나, 1973년 발전·송전·배전·판매의 전체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송전망 또한 운영이 중단된 것이었다.

1995년 이후,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의 지원을 통해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 전체적인 망이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24개의 소규모 고립된 전력망을 통해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2020년까지 매년 약 9.4%의 평균소비증가율을 보일 것이며, 2020년 말 캄보디아의 전력소비량은 약 3.4Twh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0]

수입 화석연료 및 전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지방의 낮은 전력망 시스템·전력생산 부족 및 일상적인 단전·수력 및 석탄발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4가지가 캄보디아의 에너지 정책에서 해결되어야 할 어려운 도전들이다.[11]

나. 석유·가스 개발의 역사

1958년 중국의 지질학자들에 의해 캄보디아 중부 내륙지역의 지질조사가[12] 최초로 이루어졌으며, 1960년에서 1962년 사이 폴란드와 소비에트 연합의 지질학자들이 서부 캄보디아 지역에서의 지질조사를 실시했다.[13]

1965년 캄보디아 정부는 석유 탐사에 대한 최초의 국제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었고, 1996년 프랑스-캄보디아 양자협력의 틀 안에서 유망구조에 대한 지질구조의 분석이 시행되었다.

지질조사를 넘어선 실질적인 탐사행위는 1970년 캄보디아 정부가 프랑스계 다국적기업인 Elf du Cambodia에게 80,000㎢에 이르는 대륙붕에 대한 탐사권을 부여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14] Elf du Cambodia에 대한 초기 탐사권은 5년의 탐사기간으로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될 수 있었으며, 탐사권 부여로부터 18개월 내에 탐사권역의 50%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협정체결로부터 2년 이내에 탐사정 굴착 의무, 초기 5년 동안 매년 최소 $550만의 탐사비용지출의무 등이 부과되어 있었다.[15]

그 외에도 1970년 Elf, 영국의 런던대학 등이 캄보디아 해양에서의 탄성파 탐사를 시행했으며, 1973년에는 홍콩의 Marine Associates가 원래는 Elf가 가지고 있던 대륙붕에서의 탐사권을 취득한 후, 캐나다의 Canadian Reserve에게 Farm-Out 방식으로 탐사권을 양도하였다.[16] 그 외에도 다수의 탐사권들이 부여되었으나, 1975년 크메르루주에 의해 수도 프놈펜이 장악된 이후 기존의 탐사권에 의한 석유·가스 탐사행위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

10) The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of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National Policy, Strategy and Action Plan on Energy Efficiency in Cambodia (May 16, 2013) 2.
11) OpenDevleopment, Cambodia, Energy, at <https://opendevelopmentcambodia.net/topics/energy/#ref-64091-2>.
12) 구체적으로는 지질구조를 분석해서 지질지도(Field Mapping)를 작성했다.
13) J.B. Blanche & J.D. Blanche, 'An 'overview of the exploration history and hydrocarbon potential of Cambodia and Laos', Geol. Soc. Malaysia, Bulletin 32 (November 1992) p. 135.
14) Ibid, 136.
15) Ibid.
16) Ibid,

1979년 베트남군과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군부에 의해 크메르루주가 축출된 이후에는 베트남과 소비에트 지질학자들에 의한 석유·가스 탐사가 진행되었다.
태국 및 베트남과의 복잡한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도 캄보디아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다수의 석유·가스 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본다.

(1) 캄보디아의 석유·가스 유망지역

(가) 육상

캄보디아 육상에서 석유·가스 잠재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지역은 카르도모메스/코리리(Cardomomes/Elephant) 산맥 인근, 프놈펜·톤레사프호수 인근의 중부분지, 메콩분지 및 프렉크리엥(Prek Krieng)·시엠피엥(Siem Peang) 인근의 동부분지 등이다.[17] 육상에서의 유망 지역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 2.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동부 유망지역은 베트남과 지질구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스의 개발이 현실화되는 경우 국가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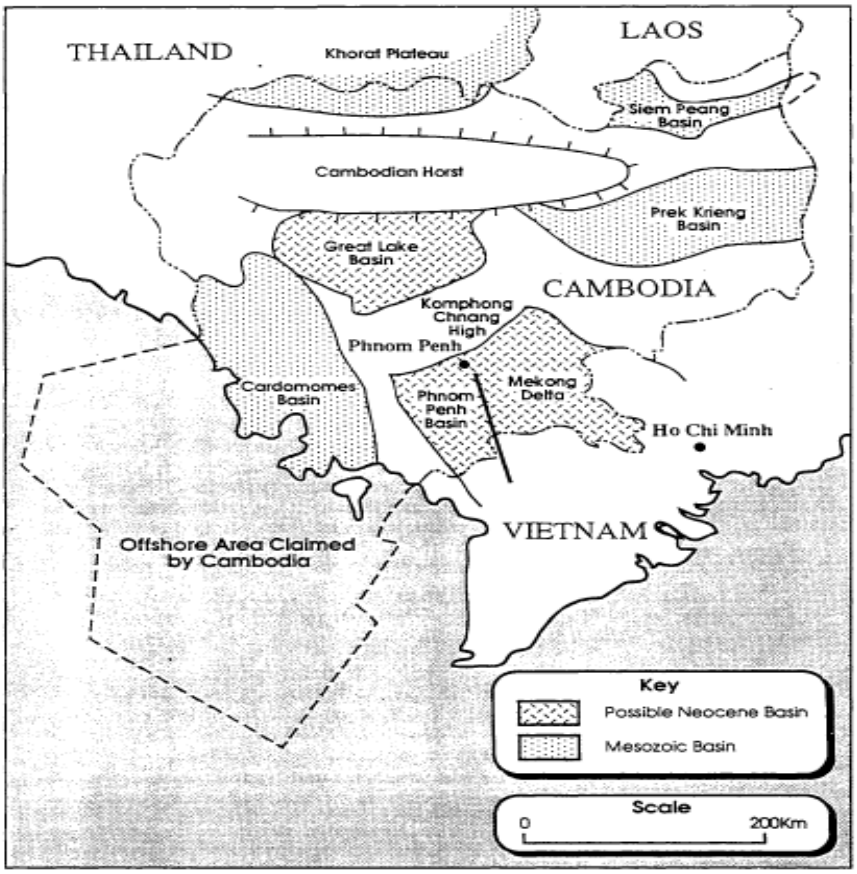

그림 2 캄보디아 육상의 석유·가스 개발 유망지역

17) Ibid, 141.

(나) 해저

캄보디아의 해양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의 해저는 태국 쪽의 파타니 해구(Pattani Trough)·크메르 대륙붕 및 판장 분지(Panjang Basin) 3개의 분지가 있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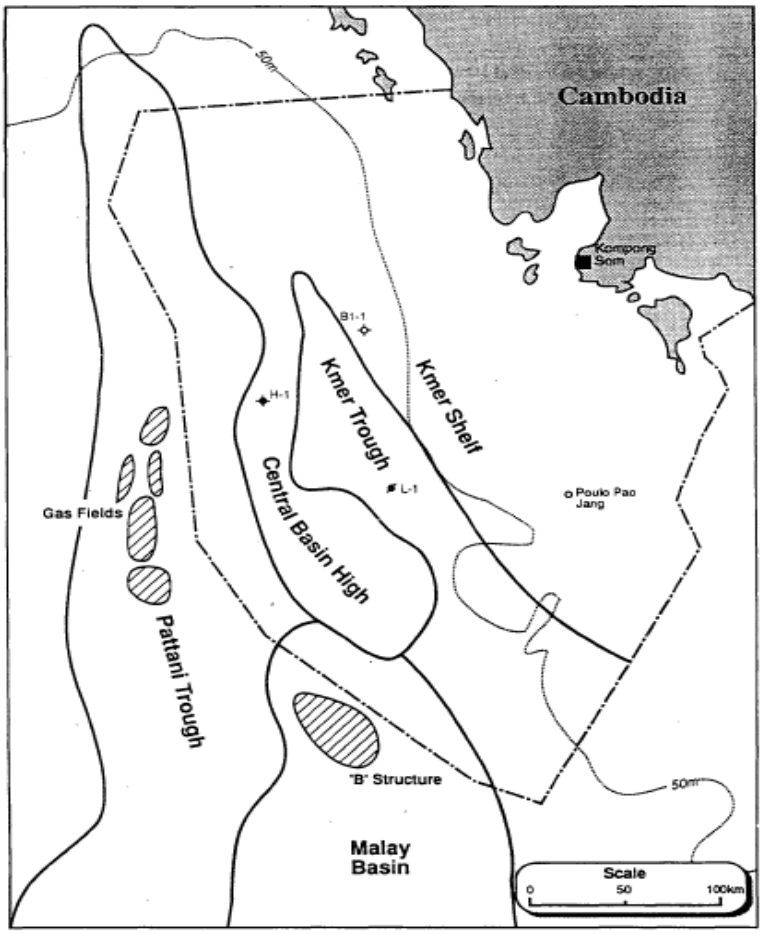

그림 3 캄보디아의 해저 분지

그 중 파타니 해구는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말레이 반도와 캄보디아 사이에서 북에서 남으로 길게 발달되어 있으며 폭이 좁다. 현재 태국이 파타니 해구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다.[19] 그리고 태국과 해양경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발가능성은 높더라도 실질적인 개발은 어려운 상황이다.

크메르 대륙붕은 파타이 해구 오른쪽에 존재하며, 파타이 해구와는 크메르 해구로 구분되어 있다. 기존에 Elf에 의해 탐사가 진행되었고, 천연가스의 매장이 유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Ibid, 139.

19) KI-Media, Pattani Trough: A maritime oil and gas areas in dispute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at <http://ki-media.blogspot.kr/2007/05/pattani-trough-maritime-oil-and-gas.html>.

판장 분지는 미국지질조사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저지도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20] 아직까지 판장분지에 석유·가스의 존재에 대한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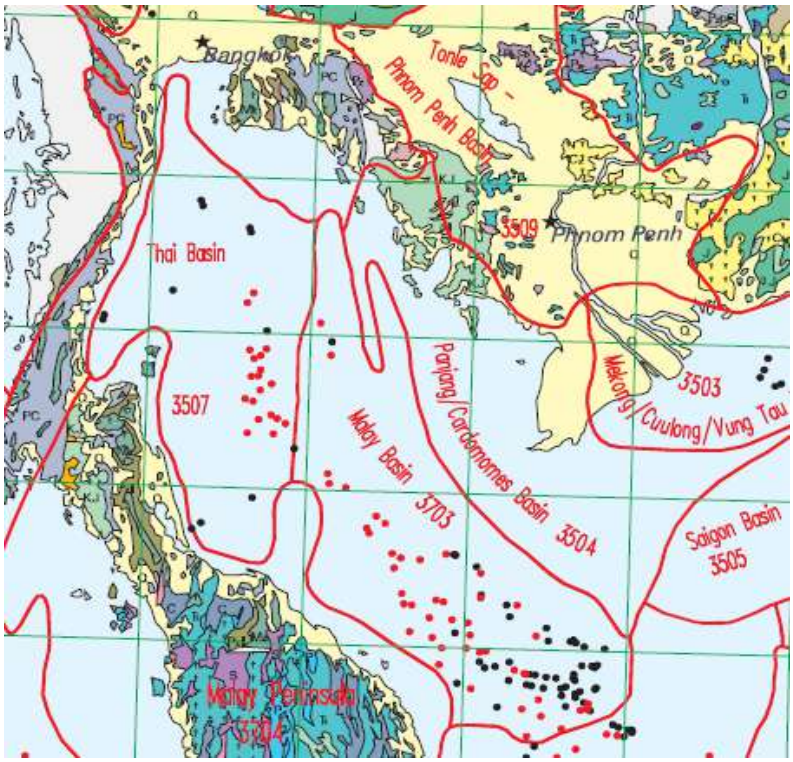

그림 4 태국만 인근의 해저분지　　붉은 점 : 가스전, 검은 점 : 석유전

III. 캄보디아의 석유 · 가스 개발 제도

1. 석유·가스의 소유권 귀속 및 관리·통제

캄보디아 헌법은 토지·지하자원·천연자원 등에 대한 소유권이 국가의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21] 또한 국유재산에 대한 통제·사용 및 관리는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환경보호의무와 함께 천연자원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석유·가스·

20) USGS, Maps Showing Geology, Oil and Gas Fields, and Geologic Provinces of the Asia Pacific Region, 15.
21)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Article 58: State property comprises land, underground mineral resources, mountains, sea, undersea, continental shelf, coastline, airspace, islands, rivers, canals, streams, lakes, forests, natural resources, economic and cultural centers, bases for national defense and other buildings determined as State property.
The control, use and management of State properties shall be determined by law.

광업 등의 관리에 대해 정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22]
따라서 캄보디아에서는 석유·가스가 국유이며 이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국가에 귀속되어 있고, 국가가 수립하는 계획에 따라 개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처분권이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석유·가스개발에 대한 방식 중 양허계약의 형태는 인정되기 어렵고, 생산물분배협정 또는 서비스제공계약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으며, 캄보디아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중 생산물분배협정을 채택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향후 석유·가스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다른 자원보유국들이 보여준 행태와 같이 국가의 운영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2. 석유·가스 개발 관련 제도

캄보디아의 석유·가스 등 천연자원에 대한 제도는 캄보디아의 자원보호 및 자국 내 자원개발이라는 정책목적 실현을 위해 최근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기구를 포함한 외부의 재정적 지원 확대에 따라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확대 및 세분화될 것이다.[23]
아직까지 석유·가스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스 산업은 1991년 제정된 석유규정(Petroleum Regulation)를 따르고 있다.[24] 석유법을 대신하는 석유규정은 석유개발에 대해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산업부·광업에너지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1998년 국왕 명령에 의해 석유·가스 분야에 대한 국가 책임기관이 기존의 광업에너지부에서 새로 설립된 캄보디아 국가 석유청(Cambodia National Petroleum Agency)으로 이전되었다.[25] 국가 석유청의 업무에는 국왕을 포함한 정부에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석유·가스에 대한 탐사 및 개발에 이르는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체적인 산업을 촉진하는 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다. 국가 석유청은 관련 업무의 수행에 대해 국가 석유청은 수상의 감독 아래에 있으며, 내각의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

22) Constitution of the Kingdom of Cambodia
Article 59: The State shall protect the environment and the balance of natural resources and establish a precise plan for the management of land, water, airspace, wind, geology, ecological systems, mines, oil and gas, rocks and sand, gems, forests and forestry products, wildlife, fish and aquatic resources.

23) Domenico Ferrari, Oil and gas projects in Cambodia: A regulatory framework and commentary on prospects for investors (February 26, 2015) at <http://www.nabarro.com/insight/briefings/2015/february/oil-and-gas-projects-in-cambodia-a-regulatory-framework-and-commentary-on-prospects-for-investors/>.

24) 1991년 제정되어 1992년 9월 28일 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25) Royal Decree on the Formation of the CNPA
Article 1: Establish the Cambodian National Petroleum Authority in order to manage, govern, and provide the RGC with recommendation on the policy guidelines and also to facilitate petroleum exploration and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on overall petroleum business operations activities both Upstream and Downstream including exploration, exploitation, assessment, development, production, processing, transportation, storage, refinery, petrochemical products, export-import and marketing etc., in accordance with agreement or contract with the individual, legal person or entity or authority or petroleum companies.

국가 석유청의 권한 범위는 아주 포괄적이지만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26)]

- 석유·가스개발에 대한 전략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의 수립
- 석유·가스자원의 부존지역과 그 특성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보존
- 석유·가스개발 구역 또는 광구의 결정
- 석유·가스개발 관련 청약의 유인, 입찰
- 입찰평가에 대한 평가기준 수립
- 석유·가스개발 협정과 관련된 협상 및 협정 내용의 수정

---

26) Royal Decree on the Formation of the CNPA

Article 4: The Cambodian National Petroleum Authority shall have the following duties and capabilities:

— Set up strategy and policy guidelines in order to effectively rule the petroleum exploration, production, and petroleum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 Collect and preserve data and information relating to the area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etroleum resources in Cambodia

— Based on the existing data, determine the petroleum areas or blocks throughout the Kingdom of Cambodia in order to divide those areas into the exploration blocks through the international bidding or direct negotiation with the petroleum companies.

— Issue tender notices on the bidding for the petroleum areas, receive bidding document applications, and carry out procedures of registration of the bidding companies.

— set up the rational criteria for the evaluation on the bidding documents and the appropriate minimum work program and budget for the exploration in each block or area.

— Conduct negotiations and make amendments to any agreements or contracts which would be requested by the bidding companies based o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echnical standard with the transparency and the national economic profits.

— The Chairman of the Cambodian National Petroleum Authority, following the decision and approval of the Royal Government and with the receipt of delegation of power from the RGC, shall have right to sign on the agreements/contracts on the conditional petroleum areas or non-conditional petroleum areas, the transfer of rights, extension given to the selected companies.

— Conduct an audit and examination on financial status of the petroleum contract, observe the facilities and work obligations of the contractors for the initial contract-the transfer of rights-and for the extension of exploration period; follow up the test-results-quantity- and collect the data and oil specimen.

— Convene regularly the board of management, the contractors,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s on legal, economics, and techniques in order to make progress on such subjects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authorities.

— Keep control on the downstream activity.

— In cooperation with other relevant authorities and oil companies in Cambodia, set up the storage place in order to store the appropriate quantity of oil for the use in the special occasion or in any other urgent cases.

— Create the security system around the tankers, gas stations, gas pipelines, and especially, take the activity against environment impact and lives of the people.

— Fix the law and regulation to control and limit the criteria on refinery project, limit the quantity of the final products needed for the local use, distribution, shipment, and marketing.

— Promote the quality control and fix the standards on the petrochemical products and liquid gas (LNG, LPG, …etc.), Methanol.

— Create the commercial rule to fix the oil value and promote the free market price and quality.

- 석유·가스개발 협정에 대한 서명
- 석유·가스개발 관련 재정 상태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시설에 대한 감독, 작업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 관리인·계약당사자·법적, 경제적, 기술적 전문가의 회동
- 하류부분에 대한 통제
- 다른 국가기관과의 협조
- 유조선, 저장시설 등과 관련된 안전기준, 환경보호 기준의 수립
- 정유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법과 규제의 정립
- 석유생산물, 액화가스 등에 대한 품질향상 및 품질기준 수립

- 석유 품질에 대한 상업적 기준수립 및 시장 자유화 촉진

석유규정은 석유·가스의 개발을 실행할 당사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기본적인 석유·가스개발의 방식은 생산물분배협정이며,[27] 생산물분배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석유청과 개발회사의 개별적 협상에 따라 결정된다.

3. 석유·가스 개발권 부여 현황

캄보디아의 육상 및 해상광구의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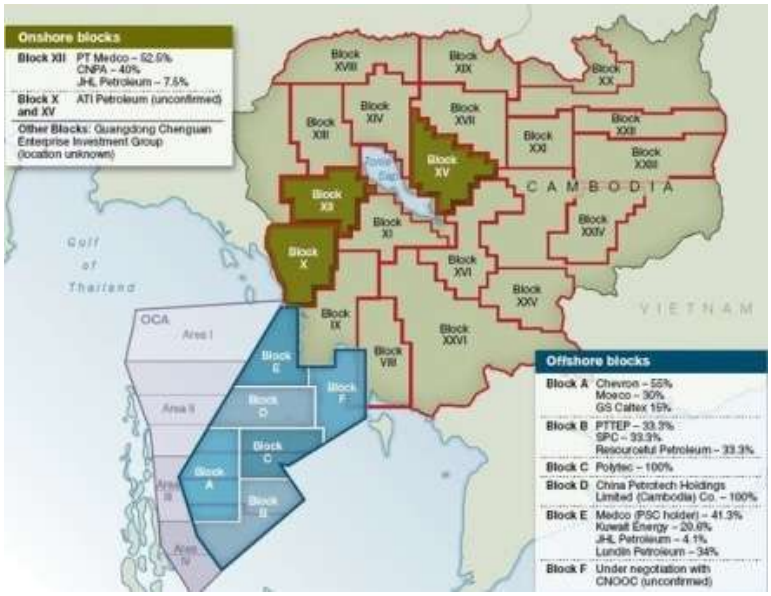

그림 5 캄보디아의 육상·해상 광구

27)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1. Definitions
7. Petroleum Agreement means a Production Sharing Contract.

가. 육상

캄보디아는 석유·가스의 개발을 위해 19개의 육상광구가 분할되어 있으며, 그 중 3개의 광구에 대한 탐사권이 부여되어 있다. 3개의 광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8]

광구	위치	탐사권자
제12광구	톤레사프 호주 좌측	메드코 에너지(Medco Energy), 제이에이치엘 석유(JHL Petroleum)
제15광구	캄퐁톰(Kampong Thom province) 주의 톤레사프 호수 우측	페트로 베트남(PetroVietnam)
제17광구	프레아 비히어(Preah Vihear), 시엠립, 캄퐁통 지역 인근	일본 조그맥(Japan Oil, Gas and Metals National Corporation)

표 3 캄보디아 육상광구 개발현황

2016년 초 광업에너지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탐사가 진행되는 육상 유전은 제15광구 하나 뿐이며, 페트로 베트남이 2016년 후반기에 탐사정을 굴착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
2014년 광물에너지부의 부심의관은 육상유전의 국제입찰에 대한 입찰을 시작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29]

나. 해저

캄보디아의 해저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구역은 6개의 광구(A-F)로 구분되어 있으며, A광구에서 석유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징후는 있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0]

뒤의 국경분쟁 관련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캄보디아는 태국과 해양경계획정에서 중첩적으로 주장되는 지역(Overlapping Claims Area)이 있으며 이 지역에 4개의 해상광구가 지정되어 있다.

2016년 1월 해저 A광구의 운영권자인 크리스에너지(KrisEnergy)는 곧 석유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국제유가가 배럴 당 최소 $70 이상은 되어야 현실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31]

6개의 해저광구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32] 다만, 2016년 1월, 캄보디아 정부는 탐사활동에 대한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광구 B와 F에 대한 리소스플석유의 개발권이 종료되었다고 선언했다.

---

28) OpenDevleopment, On-shore oil and gas exploration and extraction, at <https://opendevelopmentcambodia.net/topics/onshore-oil-and-gas-exploration-and-extraction/>.
29) Ibid.
30) OpenDevleopment, Off-shore oil and gas exploration and extraction, at <https://opendevelopmentcambodia.net/topics/%E1%9E%81%E1%9F%92%E1%9E%98%E1%9F%82%E1%9E%9A-%E1%9E%80%E1%9E%B6%E1%9E%9A%E1%9E%85%E1%9E%98%E1%9F%92%E1%9E%9A%E1%9E%B6%E1%9E%89%E1%9F%8B%E1%9E%94%E1%9F%92%E1%9E%9A%E1%9F%81%E1%9E%84/>.
31) Ibid.
32) Ibid.

광구	위치 및 면적	탐사현황
광구 A	태국만 6,278㎢	- 2002년 쉐브론(Chevron Overseas Petroleum (Cambodia)) 모에코(Moeco Cambodia)에 개발권 부여 - 2005년, 쉐브론 4개의 유정에서 석유, 1개의 유정에서 가스를 발견했다고 발표 - 18개의 탐사정 굴축 후 2010년 상업적 발견 발표 - 2014년, 크리스에너지(KrisEnergy Ltd)가 쉐브론의 지분 및 운영권 인수 - 크리스에너지, 캄보디아 정부와 생산협정에 대해 협의 중
광구 B	6,551㎢	- 2005년, 피티티 싱가폴(PTT Exploration and Production, Singapore Petroleum) 및 리소스플석유(Resourceful Petroleum Ltd)에 탐사·생산권 부여 - 2013년, 피티티 싱가폴 지분 리소스플석유에 양도
광구 C		- 폴리텍 홍콩(Polytec Petroleum Hong Kong)에 개발권 부여 - 탄성파 탐사 단계에 있음
광구 D	5,507㎢	- 싱가포르에 상장된 미라크에너지(Mirach Energy Limited)에 30년 기간의 생산권 부여 - 2014년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탐사허가 취득 - 2015년 6월, 미라크에너지, 중국 선전에 상장된 2개의 자회사(Landocean Energy Services Company, Chengdu Western Union Petro Engineering Technology)에 개발권을 이전하기 위한 승인 요청,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 2016년 3월, 미라크에너지가 2018년까지 탐사권을 연장하기 위해 2016년 탐사정을 굴착할 것이라고 발표
광구 E		- 메트코(Medco Energi), 쿠웨이트에너지(Kuwait Energy)와 제이에이치엘석유(JHL Petroleum)에 개발권이 부여되어 있었음 - 2016년 초반 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어떤 회사도 개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광구 F		- 중국 국영 해양석유(Chinese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에 개발권이 부여되었으나, 2013년 리소스플석유에 지분 이전

표 4 캄보디아 해저광구 개발현황

4. 캄보디아의 석유·가스 개발과 해양경계분쟁

태국만에서 캄보디아와 중첩적인 해양경계가 주장되는 면적만도 27,00㎢에 이르며, 이 지역에 부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가스는 약 11조ft^3 이고 석유의 부존양은 확정되지 않았다. 1997년 캄보디아 정부는 해양경계가 중첩적으로 주장되는 지역에 대한 굴착권을 5개 회사에게 부여하였으나, 태국과 해양경계에 대한 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이 붙어 있었다.[33]

캄보디아와 태국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이견은 직선기선을 인정할 것인가, 섬의 효력을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에 있다. 캄보디아는 1907년 체결된 프랑스-시암 육상 경계에 대한 의정서(Franco-Siamese land boundary protocol)에 기초하여 캄보디아 측의 작은 섬들에 대해서는 해양경계획정에서 완전한 효력이 부여되었음에 반해, 코크라 섬을 포함한 태국 측의 섬들에 대한 효력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태국은 1907년 의정서에 대한 캄보디아의 해석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캄보디아의 직선기선을 부정하였다.[34] 아래 그림은 태국만을 둘러싼 해양경계분쟁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35]

2001년, 캄보디아와 태국은 상호 중첩되는 해양영역에서의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the Area of Overlapping Maritime Claims to the Continental Shelf)를 체결하고, 상호 해양경계의 획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나, 2006년 태국의 정권이 변동되면서 관련 협상의 진행이 중단되었고 2009년 태국정부에 의해 양해각서의 효력이 중단되었다.[36]

2001년 양해각서가 체결된 배경에는 해양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는 수역에서의 어업행위와 관련된 캄보디아 해양경찰과 태국 해군의 잦은 충돌, 분쟁수역에 석유·가스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능성, 캄보디아가 1997년부터 분쟁수역에 석유·가스 개발권을 부여했으나 태국과의 해양경계협정이 이루어질 것을 해제조건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필요성 등이 있었다.[37]

2009년 태국에 의한 협상 종료선언에도 불구하고, 양국 사이에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쟁점인 생산물에 대한 분배 및 공동개발 대상 구역에 대해 거의 합의에 이르렀다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38]

33) Domenico Ferrari, above n 23.
34) Tara Davenport, 'Joint Development in Asia: Lesson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South China Sea', 8th Asian Law Institute Conference (May 26, 27, 2011) 21.
35)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Marine Energy Resources in Asia (December 2011) ix.
36) Ibid.
37) Tara Davenport, above n 34, 21.
38)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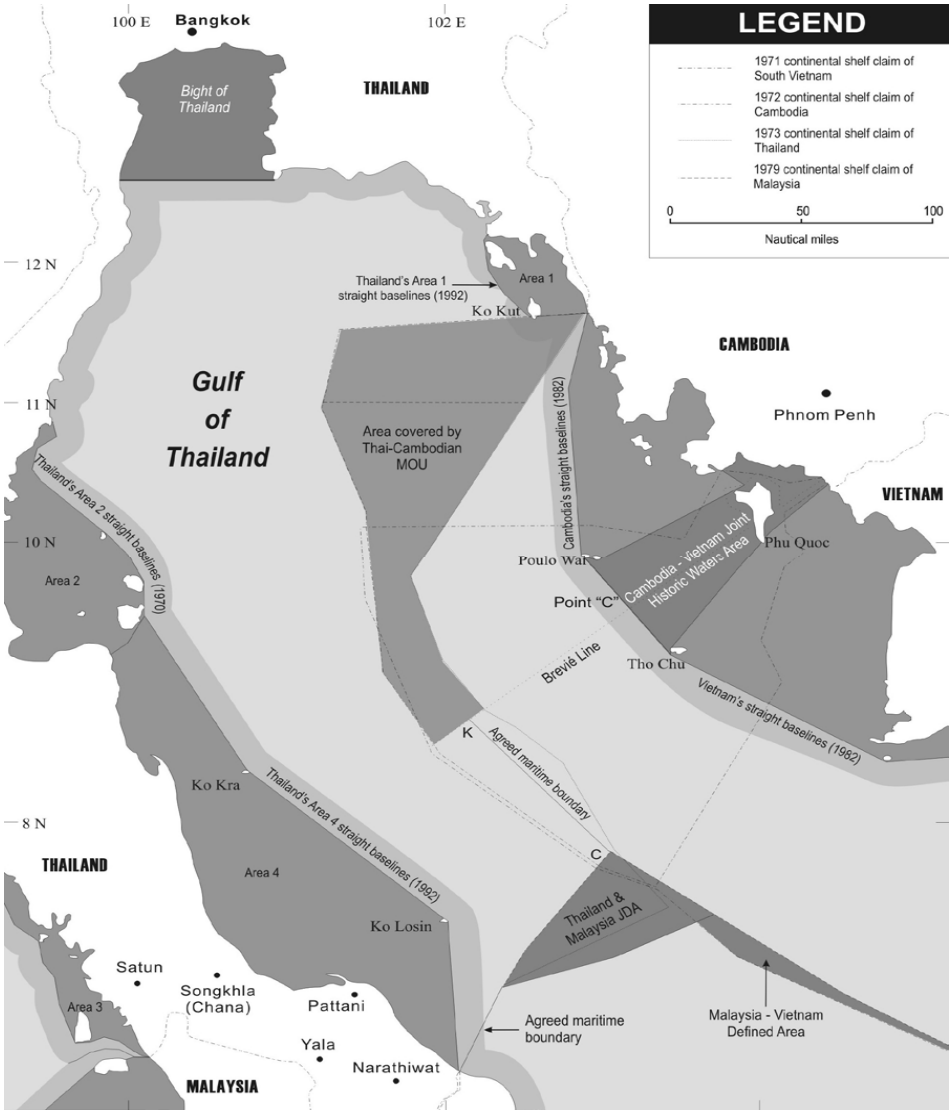

그림 6 태국만을 둘러싼 해양관할권 분쟁

IV. 캄보디아 석유 · 가스 개발 협정의 내용

1. 기본적인 법적 기준

캄보디아 석유규정 및 생산물분배협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탐사 및 개발기간 : 탐사 3 + 2 + 2년, 개발 3 또는 4년
- 생산기간 : 최대 30 + 5년
- 탐사의무 : 2D 탐성파 탐사, 3D 탄성파 탐사, 1 – 2의 탐사정
- 로열티 : 12.5%
- 서명보너스 : 협상에 따라
- 생산보너스 : 협상에 따라
- 비용 회수 : 협상에 따라
- 생산된 원유의 분배 비율 : 슬라이딩 방식에 따름
- 생산된 가스의 분배 비율 : 슬라이딩 방식에 따름
- 소득세 : 30%
- 국내판매의무 : 캄보디아의 국내 수요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 캄보디아 정부의 참여 : 캄보디아 정부가 석유·가스 생산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유해야 함

그 외에도 안전, 보건, 환경 등에 대한 법률의 준수, 석유·가스 개발에 따른 운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환경법 기타 관련 법률을 준수할 의무 등이 운영권자에게 부여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운영권자는 환경관리계획, 긴급조치계획 및 원유 유출 비상조치계획 등을 캄보디아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2015년 캄보디아 정부는 국영석유회사의 설립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으나,[39] 현재까지 후속적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많은 생산물분배협정 방식을 채택한 국가들이 국영석유회사를 통해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통제와 때로는 직접 운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도 이와 같은 방식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 캄보디아 생산물분배협정의 구체적 분석

가. 개발권 취득

석유·가스 개발에 필요한 권리는 입찰을 통해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석유청이 입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입찰에 대해, 국가 석유청은 입찰참가자의 경제적 능력, 기술적 능력, 석유 마케팅에 대한 경험,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탐사기간 동안의 최소작업 및 비용지출의무,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생산 원유의 분배 비율,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교육·훈련 시설, 기타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시설 및 혜택, 그리고 나머지 관련 사항 들을 평가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40]

39) The Cambodian Daily, Government Considering National Oil Company, at <https://www.cambodiadaily.com/archives/government-considering-national-oil-company-79538/>.

협상대상자(Qualified Bidder)가 선정되면, 국가 석유청과 별도의 협상 절차에 들어간다.

나. 개발권과 개발권역

하나의 입찰참가자에게 2개 이상의 광구에 대한 탐사운영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협정은 각 광구별로 나뉘어 체결된다.[41]

다. 탐사기간

위에서 본 것처럼 탐사기간은 탐사 기본 3년에 2차에 걸쳐 2년씩 연장될 수 있다.[42][43] 또한 탐사기간 만료 전이 이미 착수된 탐사정에 대한 굴착·분석·검사 등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또는 평가작업의 완료, 구체적 개발작업 프로그램의 준비 및 제출 등의 이유로 탐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라. 개발권역의 포기(반환)

개발권자는 초기 탐사기간의 종료와 더불어 원개발권역의 30%를 반환해야 한다.[44] 그리고 제1차로 연장된 탐사기간 종료와 더불어 원개발권역의 25%를 추가로 반환해야 하며, 전체 탐사기간 종료와 더불어 나머지 원개발권역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이미 생산단계에 진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캄보디아의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은 개발권역의 반환을 의무적 반환과 임의적 반환으로 나누고 반환구역의 비율에 대해서도 당사자와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45]

마. 탐사단계에서의 최소작업의무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르면, 최소작업의무는 탐사단계에서의 최소작업의무와 탐사성공 후 개발단계에서의 최소작업의무로 구분된다. 개발단계에서의 작업의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보고, 여기서는 탐사단계에서의 최소작업의무에 대해서만 정리한다. 한편, 석유규정은 탐사단계에서의 최소작업의무에 대한 규정은 두지 않고 개발단계에서의 최소작업의무에 대해서만

---

40)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5.1 Upon receipt of bids the Ministry of Industry shall evaluate them according to the following criteria:
1. Financial competence of the bidder.
2. Technical competence and professional experience of the bidder.
3. Experience of the bidder in marketing of Petroleum.
4. Proposed minimum work and expenditure obligations during the Exploration Period.
5. Proposed allocation of Net Petroleum.
6. Proposed educational and training facilities.
7. Other facilities and benefits proposed.
8. any other relevant particulars.

41)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9.

42)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15.

43)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4.

44)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16.

45)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5.

규정하고 있다.
탐사단계에서의 최소작업의무는 초기 3년 및 추가 2회 2년의 연장기간에 대해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아래 표는 초기 3년의 1단계 탐사기간의 최소작업의무에 대한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의 예이다.[46]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Work Obligation(Sample only)	Estimated Cost(Dollars)
(a) Process, interpret and analyse existing data with respect to the Contract Area	$80,000.00
(b) Acquire two hundred (200) sq km of 3D seismic-data over selected parts of the Contract Area, process and interpret the data	$,1,200,000.00
(c) Drill one - (I) exploratory well to an estimated depth of 2,500 m or economic basement, whichever is reached first.	$600,000.00
Total US $	**$1,880,000.00**

바. 평가작업 프로그램 및 예산

석유규정에 따르면, 개발권역 내에서 상업적 가능성이 인정되는 석유·가스가 발견되는 경우 개발권자는 개발성공에 대한 통지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체적인 평가작업 프로그램 및 관련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47]
표준 생산물분배협정 또한 석유규정과 같이 개발성공에 대한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국가 석유청에 상업성 평가와 관련된 평가작업 프로그램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48]

사. 생산허가의 취득과 개발작업 프로그램

석유·가스를 발견한 개발권자는 국가 석유청에 생산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발견한 것이 석유이냐 가스이냐에 따라 그 조건이 다르다.
즉, 석유는 발견 당시에 상업성이 인정되어야(Currently Commercial) 생산허가의 신청이 가능한 반면, 가스는 발견 당시의 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향후 상업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잠재적 상업성(Potential Commercial)에 대해서도 생산허가의 신청이 가능하다.[49]
개발권자는 생산허가의 신청과 더불어 구체적인 개발작업 프로그램(Developement Work Program)을 제출해야 한다.[50][51]
표준 생산물분배협정 또한 석유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에 대한 절차, 생산구역 및 개발작업 프로그램, 개발행위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52]

---

46)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6.2
47)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18.
48)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7.2.
49)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8.1.
50)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19.
51)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8.3

아. 생산물 분배와 보너스

석유규정 및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르면, 생산된 석유·가스의 12.5%가 캄보디아 정부에 로열티로 귀속된다.[53][54] 로열티로 캄보디아 정부에 제공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물의 90%에서 개발권자는 비용회수물량을 취득할 수 있다. 나머지 10%(순생산 원유)는 슬라이딩 방식의 비율에 따라 의해 캄보디아 정부와 개발권자에게 귀속된다. 아래 표는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른 분배 비율이다.

Net Oil production (annual average BOPD)	Contractor's allocation	CNPA's allocation
Up to 30,000 BBL per day	55%	45%
Portion in excess of 30,000 BBL per day	45%	55%

표 6 캄보디아의 순생산 원유의 분배 비율

한편, 천연가스의 순생산 물량에 대해서는 슬라이딩 방식을 택하지 않고 개발권자와 캄보디아 정부가 60:40의 비율로 분배하고 있다.

보너스에 대한 내용은 석유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서명보너스는 개발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생산보너스는 상업적 생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보너스는 생산물분배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55]

하지만,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은 보너스에 대해 생산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만 특정되어 있을 뿐,[56] 보너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와의 실질적인 협상에서는 보너스의 지급이 요구될 것이다.

자. 운영행위

석유규정은 석유 운영행위(Petroleum Operation)란 탐사·개발·운영행위는 물론, 처리·수송·저장·처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행위로 규정하는 반면,[57]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은 석유 운영행위를 개발권역 내에서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라 행해지는 탐사·개발·생산행위로 정의하고 있다.[58]

52)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8.

53)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21.

54)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11.1.

55)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39.

56)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18.8(f).

57)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1.
6. Petroleum Operations means Exploration, Development or Production of Petroleum and includes the treatment, transportation, storage and sale or disposal of petroleum so produced as specified in Chapter 6

58)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1.2.
Petroleum Operations means all activities undertaken by Contractor under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Contract Area, comprising Exploration Operations, Development Operations and Production Operations.

따라서 석유규정과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른 석유 운영행위에 대한 범위 불일치로 인해 법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준거법과 석유규정의 법적효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차. 운영권자의 의무

석유규정에 따르면 개발권자는 운영행위 착수 30일 전까지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국가 석유청에 제출해야 한다.[59]

석유규정의 운영권자,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에서의 개발권자는 석유·가스 개발에 필요한 일체의 자본·기술·인력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60] 석유·가스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61]

운영행위는 석유 규제와 선량한 석유 산업의 관행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하며,[62] 석유자원의 최적개발 및 보전, 안전, 환경보호, 항해의 안전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63][64]

또한, 개발권자에게 생산물의 판매의무를 원칙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석유청의 요청에 의해 캄보디아 정부에 할당되는 원유를 판매해야 한다.[65]

카. 캄보디아 정부의 의무

국가 석유청은 개발권자에게 배타적인 석유 운영권을 부여해야 하며,[66] 광구에 대한 접근권, 석유 운영행위에 필요한 토지사용권 및 안전에 대한 보장, 국가 석유청의 정부 승인 관련 지원, 국가의 동의·승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지연 또는 거부의 금지 등의 보장되어 있다.[67]

타. 법령의 변경에 따른 안정화 조항

석유·가스 개발협정의 안정성 보장은 석유·가스 개발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데, 캄보디아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은 석유 규정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의 도입으로 인해 개발권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국가 석유청은 해당 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령으로 도입된 내용을 고려하여 개발권자에게 우호적으로 생산물분배협정의 조건을 개정하는데 동의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68]

---

59)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23.1
60)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20.1.
61)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20.2.
62)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20.3.
63)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25.
64)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20.4-20.9.
65)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13.1(b), (c).
66)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21.1.
67)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21.
68)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21.3.

파.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

석유규정에 따르면, 리스되거나 또는 일시적 사용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 일체의 항구적 건설물 및 탐사·개발·생산·처리·수송·저장을 위해 항구적으로 설치된 기타 일체의 다른 자산은 건설 또는 설치와 동시에 캄보디아 정부에 소유권이 귀속된다.[69]

한편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은 석유 운영행위와 관련하여 개발권자 또는 개발권의 당사자에 의해 설치된 일체의 항구적 시설물을 '개발권자의 항구적 시설물'이라 하며, 제3자의 소유세 속하면서 리스된 시설은 제외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70] 위에서 본 것처럼 석유규정과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에서 석유 운영행위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은 개발권자의 항구적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귀속을 석유규정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에 따르면, 개발권자가 해당 시설물을 석유 운영의 목적으로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 경우 국가 석유청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 석유청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71]

만약, 국가 석유청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거절하는 경우, 개발권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제거조치를 시행해야 한다.[72]

석유·가스 개발 관련 시설물의 해체는 심각한 환경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은 이를 반영하여 캄보디아 정부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하. 공동재검토위원회[73]

생산물분배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가 석유청과 개발권자가 각 3인씩 추천한 6명으로 구성된 공동재검토위원회(Joint Review Committee)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국가 석유청의 청장이다.[74]

공동재검토위원회에는 모든 작업프로그램·분기별 보고서·연간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개발권자가 시행하는 작업의 진행에 대한 검토, 개발권자가 제출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의 검토, 하도급계약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75]

고. 세금

석유규정은 석유 운영행위로 인해 취득하는 순소득의 20-25%를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76]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은 소득세율을 25%로 정하고 있다.[77]

---

69)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28.5.
70)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22.4(a).
71)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22.4(b).
72)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22.5.
73) 공동재검토위원회의 명칭과 무관하게 그 기능을 중심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동운영위원회'라 할 것이다.
74)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34.1.
75)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34.2.
76) Petroleum Regulation

노. 국내판매의무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은 캄보디아의 국내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 석유청이 요구하는 경우, 개발권자는 개발권자에게 귀속되는 생산물의 일부를 캄보디아 국내에 판매해야 한다.[78]

도. 정부의 참여

석유규정은 캄보디아 정부가 석유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참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산물분배협정에 이와 관련된 절차를 두도록 하고 있다.[79]

캄보디아 정부가 참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참여권을 행사한 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개발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80] 다만, 교육·훈련비, 보너스, 기타 캄보디아 정부를 위해 개발권자가 지급한 비용은 참여권 행사에 따라 보전되는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81]

한편, 캄보디아 정부가 참여권을 행사하는 경우, 개발권자와 캄보디아 정부는 공동운영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82]

다만,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에는 정부의 참여에 대한 규정이 없다.

로. 분쟁의 해결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은 캄보디아 정부와 개발권자 사이의 분쟁을 상호 협의(Consultation)를 통해 호의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83]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선량한 석유 산업의 관행과 석유의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결정으로, 그 외의 나머지 분쟁에 대해서는 중재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84]

특이한 점은 전문가의 결정 또한 중재결정과 동일하게 종국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이다.[85] 또한, 전문가는 중재인이 아니며, 관련 법률과 중재규칙을 따를 의무도 없다.

중재는 3인의 임시중재로 싱가폴에서 영어로 진행되고, UNCITRAL의 중재규정을 따른다.[86]

Section 21.3.
77)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17.1.
78)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13.2.
79)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46-47.
80)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48.
81) Ibid.
82)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49.
83)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38.1.
84)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38.2.
85)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38.3(f).
86)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38.4.

모. 준거법

표준 생산물분배협정의 준거법은 캄보디아의 법률에 따르되, 국제 석유산업의 관행적 원칙과 관습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87]

국제 석유산업의 관행과 캄보디아 법률이 병행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관행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준거법 부분을 불완전하게 하고 있다.

한편, 석유규정은 캄보디아의 장관, 지방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석유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88] 그리고 석유규정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법률문화, 국제 석유산업의 관행을 고려사항으로 하고 있는 점 등 때문에 여전히 안정성이 높지는 않다.

V. 결론 – 시사점

캄보디아는 위에서 본 것처럼 석유·가스 개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국가이다. 또한 우리나라와의 거리도 상대적으로 가깝고 현실적으로 석유·가스의 생산단계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석유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석유·가스 개발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있는 중하류부분이 상류부분과 결합하여 진출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여전히 법적안정성이 낮은 점, 해상 석유·가스 광구의 경우 해영경계분쟁으로 인한 위험이 큰 점,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아직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진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87) CNPA, Petroleum Agreement in the Kingdom of Cambodia Section 39.1.

88) Petroleum Regulation Section 59.

〈참고문헌〉

ADB, Cambodia: Economy, at <https://www.adb.org/countries/cambodia/economy>.
Domenico Ferrari, Oil and gas projects in Cambodia: A regulatory framework and commentary on prospects for investors (February 26, 2015) at <http://www.nabarro.com/insight/briefings/2015/february/oil-and-gas-projects-in-cambodia-a-regulatory-framework-and-commentary-on-prospects-for-investors/>.
IEA, Cambodia: Indicators for 2014, at <https://www.iea.org/statistics/statisticssearch/report/?year=2014&country=Cambodia&product=Indicators>.
IEA, Cambodia: Indicators for 2014, at <https://www.iea.org/statistics/statisticssearch/report/?year=2014&country=Cambodia&product=Indicators>.
J.B. Blanche & J.D. Blanche, 'An 'overview of the exploration history and hydrocarbon potential of Cambodia and Laos', Geol. Soc. Malaysia, Bulletin 32 (November 1992).
KI-Media, Pattani Trough: A maritime oil and gas areas in dispute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at <http://ki-media.blogspot.kr/2007/05/pattani-trough-maritime-oil-and-gas.html>.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Marine Energy Resources in Asia (December 2011).
OpenDevleopment, Cambodia, Energy, at <https://opendevelopmentcambodia.net/topics/energy/#ref-64091-2>.
OpenDevleopment, Off-shore oil and gas exploration and extraction, at <https://opendevelopmentcambodia.net/topics/%E1%9E%81%E1%9F%92%E1%9E%98%E1%9F%82%E1%9E%9A-%E1%9E%80%E1%9E%B6%E1%9E%9A%E1%9E%85%E1%9E%98%E1%9F%92%E1%9E%9A%E1%9E%B6%E1%9E%89%E1%9F%8B%E1%9E%94%E1%9F%92%E1%9E%9A%E1%9F%81%E1%9E%84/>.
OpenDevleopment, On-shore oil and gas exploration and extraction, at <https://opendevelopmentcambodia.net/topics/onshore-oil-and-gas-exploration-and-extraction/>.
Tara Davenport, 'Joint Development in Asia: Lessons for Sustainable Peace in the South China Sea', 8th Asian Law Institute Conference (May 26, 27, 2011).
The Cambodian Daily, Government Considering National Oil Company, at <https://www.cambodiadaily.com/archives/government-considering-national-oil-company-79538/>.
The Ministry of Industry, Mines and Energy of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National Policy, Strategy and Action Plan on Energy Efficiency in Cambodia (May 16, 2013).
USGS, Maps Showing Geology, Oil and Gas Fields, and Geologic Provinces of the Asia Pacific Region.
World Bank, Cambodia, Countries at a Glance, at <http://www.worldbank.org/en/country/cambodia>.
World Bank, 'World Bank Forecasts Global Poverty to Fall Below 10% for First Time; Major Hurdles Remain in Goal to End Poverty by 2030' (October 4, 2015) at <http://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15/10/04/world-bank-forecasts-global-poverty-to-fall-below-10-for-first-time-major-hurdles-remain-in-goal-to-end-poverty-by-2030>.